

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번호: /휴대전화:)
대 상 자연유산	명 칭	
	종 류	수 량
	소재지(보관 장소)	
보호구역 · 보호물		
행위의 유형	[] 수리·정비·복구·보존처리·철거하는 행위	
	[] 포획·채취(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)·사육·도살·인공증식·인공복제·위치추적기부착·방사(구조·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·표본·박제·매장·소각하는 행위 *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·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.	
	[] 건축물 등을 신축·개축·증축·이축·용도변경(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)하는 행위	
	[]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	
	[] 토지 및 수면의 매립·간척·땅파기·구멍뚫기·땅깎기·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	
	[]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	
	[] 오수·분뇨·폐수 등을 살포·배출·투기하는 행위	
	[]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	
	[] 토석·골재·광물 및 그 부산물·가공물을 채취·반입·반출·제거하는 행위	
	[] 광고물 등을 설치·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	
[] 수질과 수온,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		

	[]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
	[]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
	[]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,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
	[]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, 경고판,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
	[]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설비 및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	[] 수목의 가지고르기, 병충해 방제,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·관리
	[] 학술·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
	[]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
	[]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·표본 또는 박제하거나,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
	[]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	[]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신청사항	위 치
	내 용
	사 유
참고 사항	※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,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.

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	착 수	소 요 경 비	원 재원
	완 료	그 밖 의 사 항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행위 계획서 1부 2. 위치도,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. 현장 사진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